

# 현장 중대재해 대응의 중요성과 역할

2022.04.1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탐정M] 38살 고 김다운, 끝내 끼지 못한 39만원짜리 절연장갑

입력 2022-01-15 10:38 | 수정 2022-01-16 10:33



[단독] 2만 2천 볼트 고압전류에 타버렸다..38살 예비신랑 김다운 씨의 비극

• 2021년 11월 5일 오후 경기 여주시의 전봇대에서 작업 중 감전사고를 당해 치료받다 같은 달 24일 사망.

• 고인이 사고 당시 작업했던 '회로 차단 전화스위치 투입 및 개방' 업무는 2만2900볼트 고압을 다루는 일

• 공기업 한전이 작업할 때에는 공사금액 절감에 대한 압박 없이 적정 작업시간 안에 활선차량을 동원해 2인1조 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하청업체에 업무가 넘겨진 뒤로는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압박과 한전의 관리감독 부실로 2인1조 작업이나 활선차량 등 장비 동원이 갖춰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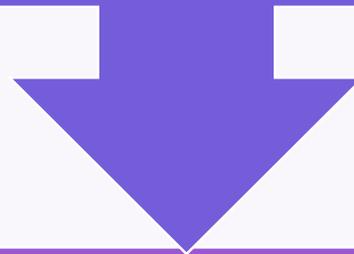
## 38세, 세상을 떠난 고 김다운 노동자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매우  
엄격하게,  
제한!

---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 산업재해

## 더 엄격!

---

###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고용노동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초진에서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로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며 치료를 받더라도, 재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재해로 인한 투병 중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재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하지 않으면?

# 왜 중대재해는 별도 규정과 처리절차를?

해당 사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것

: 중대재해 기준을 협소하게 판단할 경우 동종·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게 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 중대재해가 아니면 산업안전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재해조사를 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에 대한 비좁은 해석과 적용 문제를 넓히기 위한 투쟁, 사업장 재해조사 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이 그 자체로 필요



중대재해에  
맞선 대응,  
왜 중요한가!



# 1.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용균이가 너무 용감했습니다.”

“용균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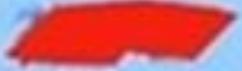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건넨 사측의 끔찍한 언행.

=> 당사자의 잘못과 실수로 몰아 회사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 안전사고 즉보

2020년 09월 10일

사업소명: 태안발전본부 기)연료설비부

보고자: 

2020년 09월 10일 09:48

날씨 : 맑음

사고종별: 열상

설비

제1부두 하역기

귀책: 본인

주소

충남 태안 원북 발전로 447-40

선분

화물차 기사

사고결과 : 중상

장해예건 :

초진결과 : 이송

성명

성명 : 이 

소속

 계서 고용한 개별화물 

## 1. 발생일시 및 장소

○ 2020년 09월 10일 오전 09:48분

# 사망 사고 발생건

차체부품구매 2019. 12. 04(수)

개 요  
(요약)

사내 하청1200톤 프레스 작업자 사망 사고 발생  
- 안전보건공단 / 노동부 / 과학수사대 수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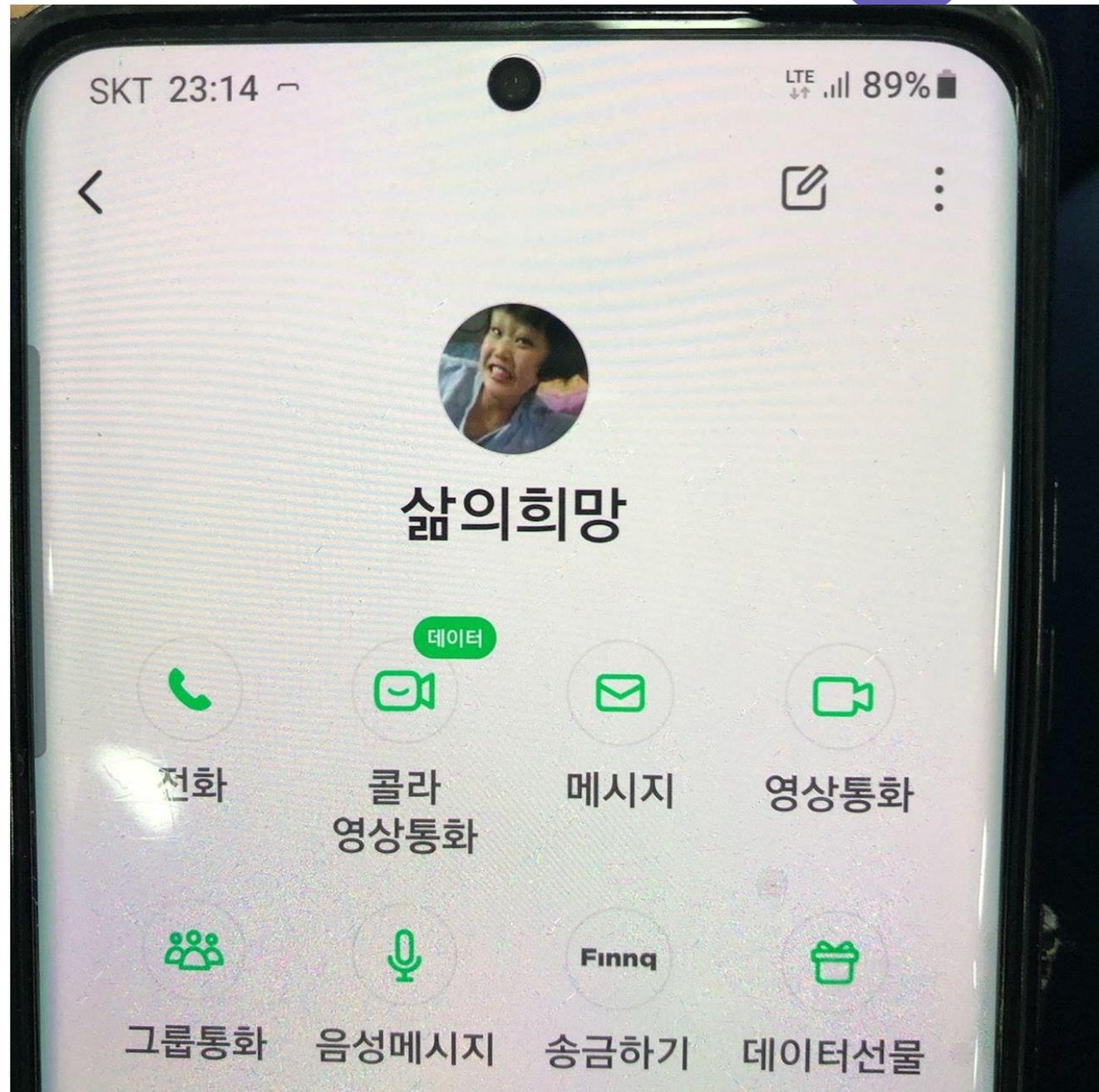
내 용

## ▣ 사고 내용

- 1) 사고일시 : 2019. 12. 04(수) 오후 12시 55분
- 2) 사고자 : 도급사 상남산업 우즈베키스탄인 1명

## ▣ 사고 사유

- 1) 1200톤 프레스 라인 금형 교체 작업중 **작업자 실수로 사망 사고 발생**  
- 2인 1조 프레스 금형 교체중 머리쪽 끼임 놀림으로 인한 사망



경향신문

PICK ⓘ

# [단독]바람에 접혔다? 해양수산청, 평택항 산재사고 원인 '엉뚱' 추정

입력 2021.05.07. 오후 7:12 · 수정 2021.05.07. 오후 11:37



조문희 기자 >



개입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

---

1>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의 '실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으로 호도된다.

---

2>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희생자에게 모든 책임이 덧씌워지고, 때론 공동작업 중 희생당한 동료들을 죽인 가해자가 된다.

---

3> 희생된 동료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고, 진상규명(재해원인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

☞ 진상규명은 희생자 명예회복의 시작!

우리는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고인의 죽음을 마주한 유족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노동조합과 노안활동가라면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유족에게 무엇이래 설명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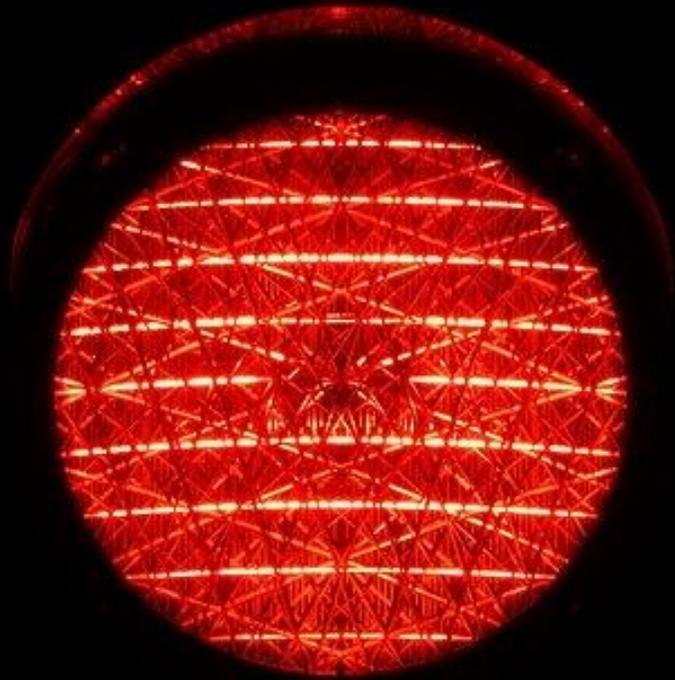
우리가 해야 할 답변은 분명하다.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이야기 하듯이 고인의 실수로, 망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망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분명, 아니다. 회사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부실이 빚어낸 결과, 그에 따라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된 동료의 희생임을 분명히 하고, 대응하자!

---

그것이 자신의 일터에서 희생된 동료 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



## 2. 또 다른 희생을 막아야 한다.

- 중대재해는 일상적인 안전보건 조치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결과
-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 간과하거나, 지나치면 또 다시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하는 현장으로 방치될 수 있어

하인리히의  
법칙

1

1번의 대형사고

29

29번의 작은사고

300

300번의 사소한 징후

# [단독] 숨지기 한 달 전에도 사고...그날도 '나홀로 작업'

입력 2021-05-11 19:52

수정 2021-05-12 13:21

컨테이너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내리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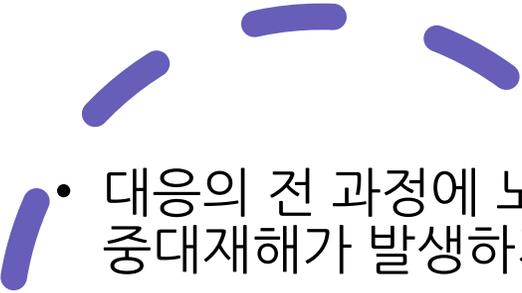
[A씨/고 이선호 씨 동료 노동자 : 제가 막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약 10kg 정도 되는 게 꼭대기까지 쌓여 있었어요.]

순식간에 쏟아져나온 화물은 이씨의 발을 덮쳤습니다.

[A씨/고 이선호 씨 동료 노동자 : (이씨의) 발등이 부었어요, 안전화 신었는데도. 만약에 머리 맞으면 깨져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씨는 이번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안전모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 대응의 전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안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

- 전체 과정에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갖는 것

- 동료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마음을 모으는 일상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기로 삼아야



### 3. 참여해야 안전하다.

일상적인 인건  
안전보건의  
활동중요성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교육
  - 일상적인 현장 안전보건활동 및 노사 합동점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022.1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 중대산업재해 부문

Q2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Q2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A

○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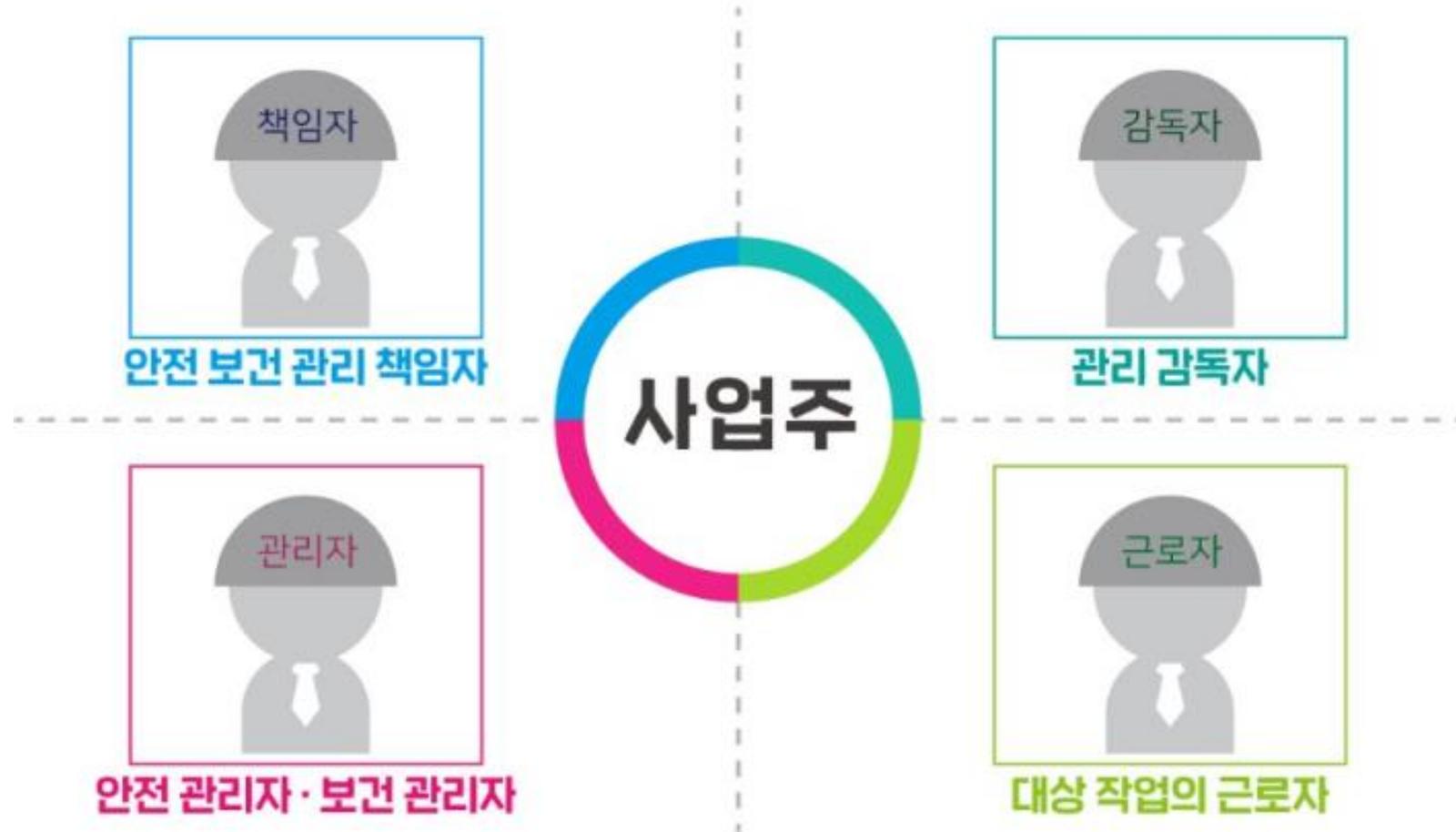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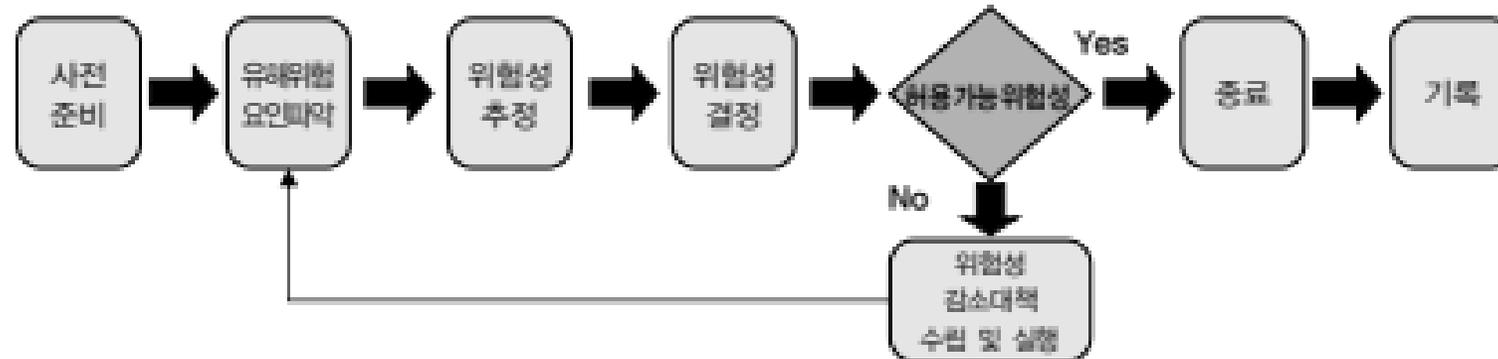
# 사고의 미연 방지가 위험성평가 도입 취지의 포인트!

- 기존의 안전관리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
  - : 사고가 발생해야, 산업재해가 발생해야 사후적 결과로서 대책을 강구했던 현실.
  - : 산업안전보건법 안 지켜도 되고, 감독때만 피해가면 되는 현실.
  - : 재해의 책임을 작업자의 책임, 부주의, 불가피하거나, 운이 없어서로 얘기했던 현실
- 산재예방의 진척이 없었던 것에 대한 판단
  - : 안전보건은 정부가 기준을 결정하여 주고, 그것을 지키면 충분하다는 발상을 전환해야.
  - : 일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 제도 도입의 취지

1.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  
=>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2. 그 요인들이 문제로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문제가 되면 얼마나 심각한 지를 파악하는 것  
=> 빈도와 중대성의 조합을 통해
3.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으로
4. 이러한 사항을 현장 작업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  
=> 교육, 훈련을 통해

# 위험성평가의 순서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  
\*반드시 포함해야

청취조사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안전보건 자료  
\* 어떤 자료를? 왜 봐야?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누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적용하는 것!



가능성  
↓  
중대성  
↑

VS

중대성  
↓  
가능성  
↑



# 화학물질

중대성	가능성
[1] 안전한 물질 [2] 자극성 화학물질 [3] 유해, 특정장기 손상 [4] 유독, 호흡기계자극 혹은 중독 [5] 발암, CMR	[1] 연 2~3회 [2] 월 2~3회 [3] 주 2~3회 [4] 매일, 4시간 이하 [5] 매일, 4시간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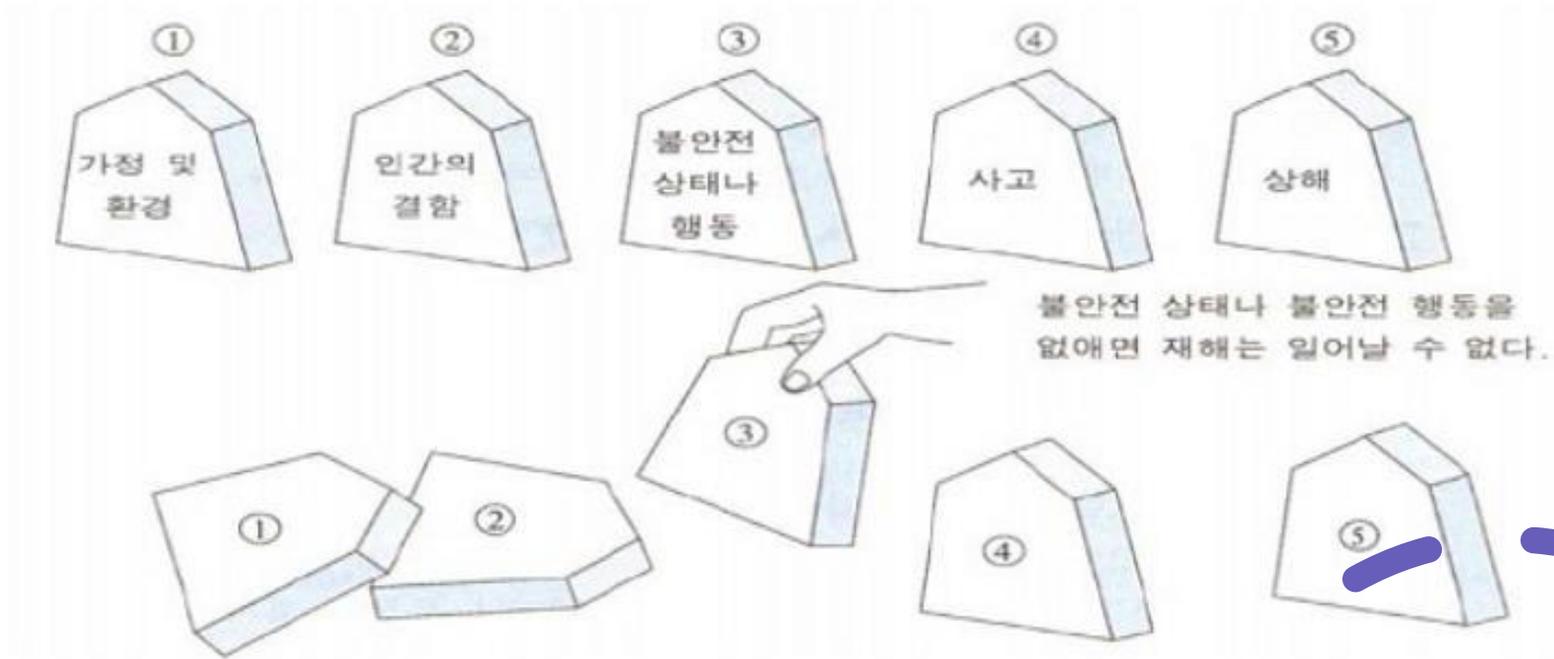
$$2 * 5 = 10$$

# 점수별 위험 정도와 관리

점수	관리
13점 이상 : 매우 높음	즉시 개선
10~12점 : 높음	가능한 한 빨리 개선
7~9점 : 보통	연간 계획에 따라 개선
4~6점 :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1~3점 : 매우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사고는 왜 발생하는가?



●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 
- 노동자 개인에게 초점
  - 사고 원인에 대한 단순화, 도식화의 위험.
  - 안전교육 철저와 같은 도식적인 재해예방 대책
  - ...



한계

**HAZARDS**

Some holes due to active fail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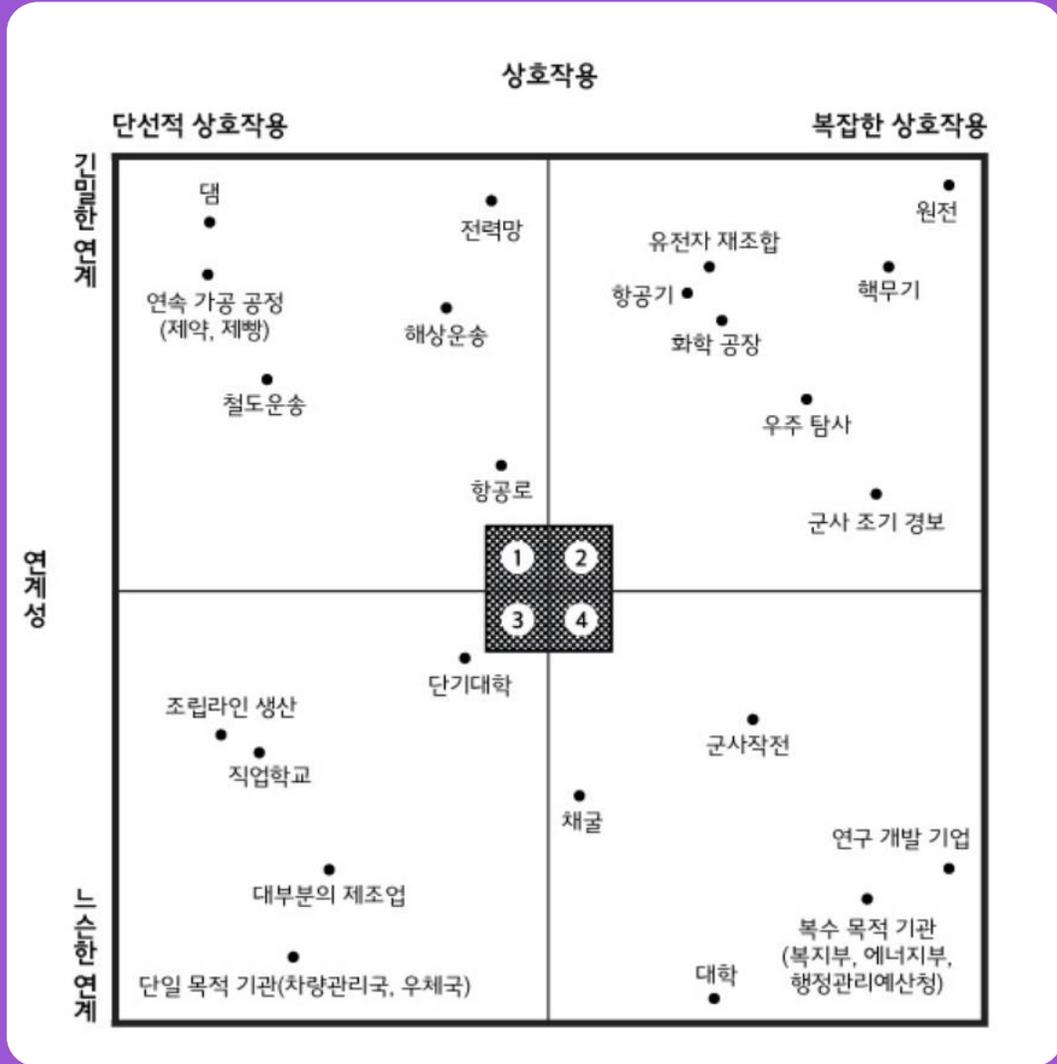
Other holes due to latent conditions

스위스 치즈 이론

**Acc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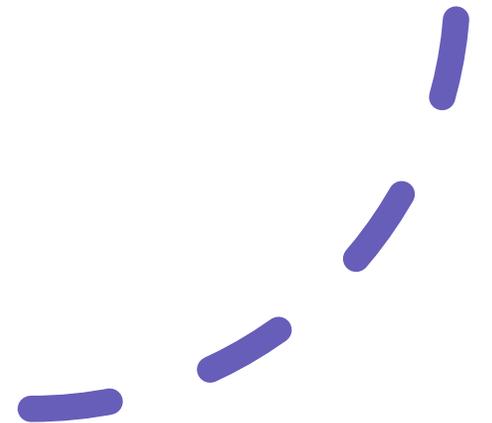


# 시스템 사고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하는  
사고는...

- 끼임, 떨어짐, 맞음, 넘어짐 등의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
- 100% 예방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것.





직접적인 사고 조사는  
어떻게?

# 해야 할 것

- 작업표준서 확인
- 사고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목격자 진술, CCTV, 일상적인  
작업관행 등 - ex)안전장치는 왜  
가동하지 않고 작동되지 않았는가?)
- 직접적 원인 + 간접적 원인 +  
구조적 원인 (조직문화 등 까지)

구분	높음	낮음	의사결정 필요 여부
시급성	( )	( v )	결정 필요 ( )
중요성	( )	( v )	단순 보고(참고) ( v )

##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부두(PNCT) 근로자 사망사고 보고

< '21. 4. 22 (목), 평택청 >

◇ 동부두 8정문(PNCT\*) CFS작업장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 중 일용직 근로자(1명)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평택신컨테이너터미널

### □ 사건 개요

- 일시/장소: '21. 4. 22(목) 16:00경 / 평택당진항 동부두 8정문(PNCT) CFS작업장
- 사고경위 : FR(Flat Rack)컨테이너 상단의 이물질 정리 작업 중 철제 컨테이너 측면이 접히면서 사망자 발생

### □ 피해 사항

- 인적피해 : 사망자 1명
  - \* 일용직 인부(이선호, 남, 만23세) / 인력 담당자(010-5220-7346)
  - \*\* 사고 추정 원인 : 안전핀 연결 없이 작업 중 바람에(추정) 철제 컨테이너 측면이 접히면서 피해자 후두부 충격
- 오염피해 : 없음
- 물적피해 : 없음

### □ 조치 사항

- (16:19) 구급차 및 육경(평택경찰서) PNCT 현장 도착
  - \* 평택경찰서 사고 조사 및 현장 점검 중
- (16:30) 사고 피해자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으로 확인
  - \* 성심중앙병원(안중 소재) 031-681-1119

### □ 조치 계획

- 부두 운영사에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교육 철저 공문 시행 및 계도 등

## 강은미 의원

4.22일 평택항 야적장 적재물 정리작업 노동자(23살) 개방형 컨테이너 깔림 관련 중대재해보고서 자료 요청

###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주소
(주)동○ 평택지사	성00	65	화물취급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 재해발생 경위

- 4.22.(목) 16:10경 경기 평택시 소재 (주)동○ 평택지사의 CFS (수출입화물보관) 창고 앞에서 재해자가 FR컨테이너\*(비규격화물 취급 컨테이너) 좌우 벽체를 접는 작업 중

- 지게차를 이용하여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접는 충격으로 맞은편 벽체가 전도되면서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깔림

\* 천장없이 앞·뒤면 만 고정하여 비규격 화물 운송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 ○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재해정도	소속	입사일자	비고
이00	98**** -1*****	사망	(주)동○ 평택지사	2021.4.22.	

### □ 조치현황

- '21.04.22.(목) 16:30경 상황전파 문자를 받아 인지  
→ 16:40경 평택지청 감독관 4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1명 **사고현장으로 출동** → 17:30경 현장 도착하여 중대재해 조사 실시

- 부분작업중지명령 조치: 사고당일 FR컨테이너내 중량물(화물 등) 반입·반출 작업 일체

### ○ 사업장 감독실시

- (인원) 총 7명(감독관 5명, 공단 2명)
- (기간) '21.4.26~4.27.

### □ 향후계획

- 철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시 책임자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점검·감독하는 등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철저

담당부서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7급 오종일	연락처	031-646-1188
------	-----------------	-----	--------	-----	--------------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항만하역업**

**2 항만하역작업의 전반적 위험성과 문제점**

① 위험하고 취급이 곤란한 화물작업

항만하역작업에서 취급하는 화물 중 철강, 조선기자재, 플랜트제품 등의 중량화물과 원목, 파이프, 철구조물 등 길이가 긴 장척화물 및 유류, 액화가스, 화학원료, 석탄 등과 같은 유해·위험화물이 많아 하역작업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② 다종·다양한 선박, 화물 및 도구와 장비를 사용한 작업

항만은 다종·다양한 선박과 화물 그리고 이를 하역하기 위한 도구와 장비 그리고 작업방법 또한 다양하여 작업표준화, 최적의 안전작업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③ 열악한 작업환경

항만하역작업은 실외작업이 대부분으로 폭한, 혹서, 폭풍, 우천, 황천 등의 기상상태와 선박 내의

소음, 야간 조명, 악취 및 분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공간의 협소에 기인한 작업자의 시야 제한, 안전거리 미확보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유해가스나 산소 결핍을 유발하는 화물과 포장이 불량한 화물이 있으며 작업 중 선박의 움직임과 에이프런과 야적장 협소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기항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계속작업과 긴급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열악함을 가지고 있다.

#### ④ 높은 노동 강도와 교대작업의 비정착성에 기인한 산업재해

대부분의 하역작업은 인력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중노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으며, 물동량의 폭주에 따른 교대작업 부족과 높은 노동강도로 작업자의 피로감 증가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떨어짐, 끼임 그리고 부딪힘과 같은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 ⑤ 항만하역 안전관리 주체의 이원화

전국 항만은 항만인력 공급체제로 본다면 상용화 부두와 비상용화 부두로 분류된다. 비상용화 부두는 항만하역작업 시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하역회사의 직원이 작업을 지휘·감독(포맨)하고 대부분의 작업은 일용직 항운노조원이 수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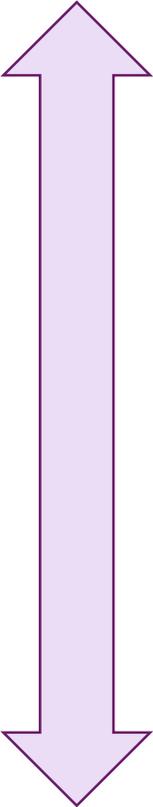
#### ⑥ 기타 불리한 조건

이 밖의 불리한 조건으로는 화물별, 선박별, 작업별로 구분된 작업표준과 안전관리기준이 부족하며, 항만과 관련된 자격제도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자격제도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이고, 항만하역 기술의 표준화 미비, 항만용어의 부정확과 불일치 등이 있다.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예방적 차원 - 중대재해 대비체계 마련



1> 산보위에서 중대재해 발생 관련 합의

2> 사고보고 체계 마련

3>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교육과 훈련

4> 단체협약 제정 및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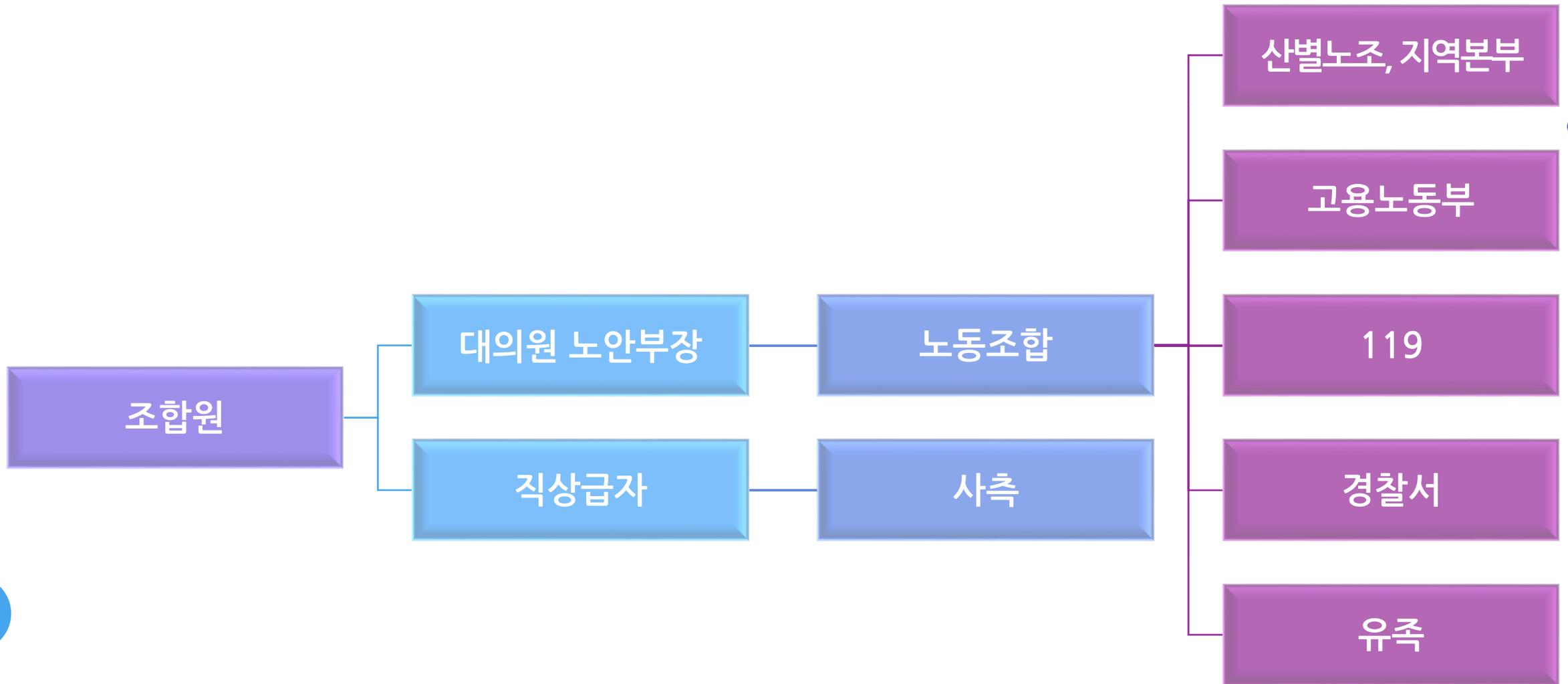


# 중대재해 발생 전 대비 체계마련



- 사고 발생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 사전 사고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훈련하는게 필요하다!

# 1. 사업장 보고체계를 완비하자! (노조 예시)



# 사고발생 대응에 따른 전담인력 역분

예시)

- 관계기관 대응: 고용노동부, 경찰, 소방서
- 유족 담당
- 대외협력: 언론 및 상급조직, 연대단위 담당
- 사측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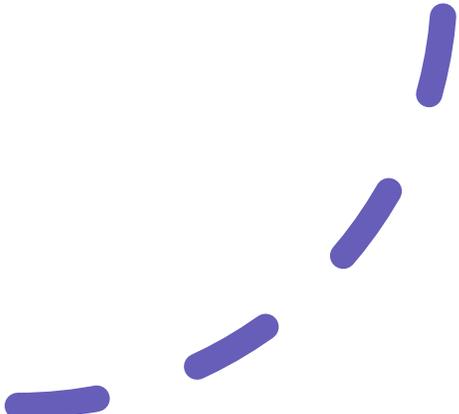
# 사내 비상연락망 구축 (예시)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사고발생 보고 체계를 작업공간 곳곳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비상상황에 따른 조합원 대응에 대한 노조차원의 교육훈련 또한 실시!
- 문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긴급 상황발생시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2. 산보위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노사의 대응조치 명문화

- 구조구난 실시
  - 작업중지 및 현장보존
  - 사고발생시 동종유사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및 노사합동안전점검
  - 작업 재개 요건에 대한 합의(사고 원인파악, 사고원인 제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등)
  - 조합원 간담회
- 

# 모범단협 (예시)

## 제0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는다.

2.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본 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하며,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조합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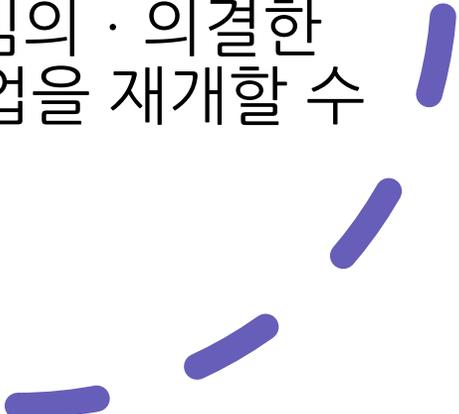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유해,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제00조(재해발생시의 대책)

- 1.회사는 재해발생시 조합에 통보하며 재해발생 현장을 보존하고, 조합 참여하에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 2.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요인 제거 및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신속하게 보고하고 은폐하지 않으며, 협조거부 등으로 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4.회사는 재해발생 및 사고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 

## 제00조(작업의 중지)

1.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하였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상기 제2항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발생의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긴급 임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5. 상기 4항에 의거 위원회는 작업 중지 여부를 심의하고, 작업 중지 결정시 회사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제00조(재해발생시의 대책)

- 1.회사는 재해발생시 조합에 통보하며 재해발생 현장을 보존하고, 조합 참여하에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 2.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요인 제거 및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신속하게 보고하고 은폐하지 않으며, 협조거부 등으로 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4.회사는 재해발생 및 사고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기간 내  
예상 시나리오  
사전 파악 및 대응

①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기

② 작업중지 범위 및 해제를 둘러싼 논란

③ 작업중지 기간동안 출근, 급여 등의 문제

##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기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에는 '작업중지'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된다. 회사는 "사고 자체로 인해 회사가 타격이 엄청나다. 그런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작업중지까지 실시된다", "작업중지가 길어지면, 손실이 커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등의 위기론과 고용불안을 조장하며 빠르게 작업재개를 할 필요성을 유포한다.

- (1) 중대재해의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밝히기
- (2) 조합원과 동료(혹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의 희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단호히 싸울 것이라는 태도의 표명
- (3) 작업중지가 길어지는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임을 분명히
- (4) 작업중지를 빠르게 해제하는 방법은 괴소문으로 조합원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대로 된 현장개선이라는 태도를 천명!

## 작업중지 범위 및 해제를 둘러싼 논란

작업중지의 범위는 어떻게?

-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동일작업'이다. 그러나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동종·유사 작업'까지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 노동부 지침에서는 축소·개악된 지침에 근거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가 사망한 장소·작업으로 한정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동일·동종작업에 대한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여, 최소한 '동종·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는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심의위에 유족이나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 심의위는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족이나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가 반대하면 해제가 이뤄질 수 없다. 심의위에 앞서 회의에 참여할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 노동조합과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자.

## 작업중지 기간동안 출근, 급여 등의 문제

작업중지 기간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조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휴업 및 휴업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노동자의 권리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2017년 노동절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당시 하청업체는 조선소 작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항변이 이유 없다고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임금(휴업수당) 체불의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604 판결)

일부 사업장에서는 작업중지 기간 노동자들을 출근시켜 청소, 사고와 관련한 뒷수습 등을 하도록 지시한다. 이를 통해 작업중지 그 자체에 대해 노동자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도록 만들기도 하며, 작업중지 기간조차 조합원들을 회사의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

회사의 통제를 벗어나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뿐 아니라 이미 상존하고 있었던 현장의 유해위험에 관해 토론 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

1기 - 중대재해 발생 즉각 대응 (당일)



2기 - 작업중지 결정~해제 심의위원회



3기 - 작업중지 해제 이후

## 1기

- 1) 사고공정 작업중지 및 현장 보존, 사고원인 파악
- 2) 노동부 연락 및 현장 조사 요구
- 3) 지역본부 및 산별 사고보고
- 4) 사망사고 시 유족면담 및 장례지원
- 5) 긴급 간부회의 진행(노동조합 요구 및 대응계획 마련)
- 6) 조합원 간담회(사고 및 이후 대응계획 의견수렴 및 설명)
- 7)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기

- 1> 노동조합 ① 사고관련 대책위 구성 및 활동, ② 조합원 교육 및 간담회(사고 예방 대책마련)
- 2> 노동부 대응 - 기자회견 및 면담, 집회 등의 방식으로 ① 작업중지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요구, ② 트라우마 치료 및 특별휴가 지도요구, ③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요구, ④ 작업중지해제심의 이행과정에 대한 요구
- 3> 사업주 대응 - 노동조합 요구안 관철을 중심으로 한 활동(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및 사과, 유족보상 등)

## 3기

- 재발방지 대책 이행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활동

1기

유  
주

기  
관

사  
채

2기

유  
주

기  
관

사  
채

3기

유  
주

기  
관

사  
채

## 1> 전 조합원에게 중대재해 발생 전파

노동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든 조합원을 포함해 해당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를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다.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쉬쉬하고 넘어가길 바란다.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만큼 관심이 넓어지고,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조합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조합원들의 즉각적인 대응의 조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1. 사고에 대한 전파

#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2. 작업중지!

- 노동조합이 중대재해 발생상황을 인지 혹은 접수를 받은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사고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시” - 작업중지

1. 사고 후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사고 수습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남아 있는 사고 원인이나 사고 자체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2차적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단의 의미이다
2. 재해의 원인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공유하고 곧바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토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Q.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막으면?

- 노동조합에서 작업대피권을 발동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응방안, 사고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 Q. 노조가 해도 됩니까?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예방적 차원에서 작업중지 및 대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생했다면 당연히 작업중지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이미 산업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2차, 3차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하는 등 노동조합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현장보존!

-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을 온전히 보존을 해야 한다. 사고원인에 따라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보존은 너무나 중요하다.
-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도록 하자. 그리고 사고현장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어느 누구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고현장은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활동 외에 생산활동 등의 업무를 제한을 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해야할 것



2

### 사고 현장 보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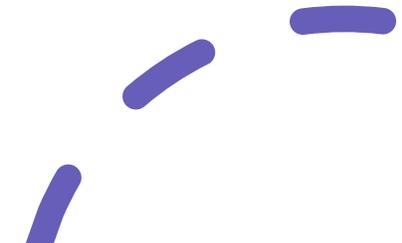
사고 현장 보존은 교통사고 발생 시 꼭 필요합니다.

사고 및 피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고, 바퀴의 방향과 자동차 접촉 부분의 근,원거리 사진을 찍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 회사가 현장을 훼손하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보존의 필요성은 법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회사가 이를 훼손하려 한다면, “당신들 범법행위 하는 거야!”라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 회사의 도발과 현장훼손을 시도한다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기록해 놓도록 하자!



Q.  
현장보존이  
가능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4. 작업중지 명령 강제 (행정명령)

- 사고발생 즉시 고용노동부 **1588-3088 위험상황신고전화**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로 공문, 전화 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발부번호 : \_\_\_\_\_ 호

# 작업중지명령서

아래 작업은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업중지 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면 <input type="checkbox"/> 부분
작업중지 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2019년 1월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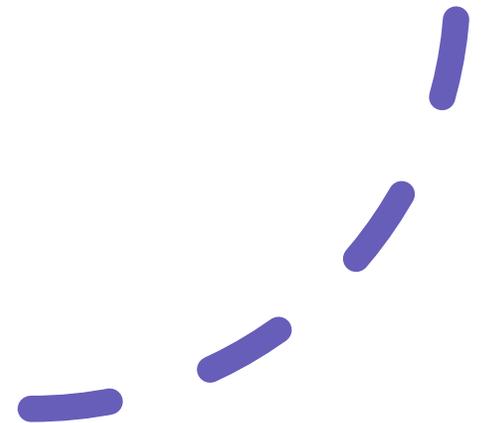


근로감독관 김용훈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5. 상급단체로 즉각 통보

- 소속해 있는 산별노조,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으로 즉시 사고사실을 알리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위를 구성하도록 하자.



Q. 꼭  
대책위  
구성이  
필요한가요?

- 지역과 산별에서 여러 경험을 한 동지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노동조합의 실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 사업장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측의 논리와 입장이 관철될 수 있다.

# 자본

VS

# 노동자

결과

원인

개인, 재해자, 당사자

조합원,  
일하는 사람 모두

보상

예방과 재발방지

노동재해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힘이 큰 상태에서 싸워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싸워야 유리하다.

## 6. 비상대책회의 및 조합원 간담회

- 노동조합은 작업중지 조치 이후 바로 비상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중대재해를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조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해당 공정 조합원을 비롯해서 전체 조합원 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요구안을 구성하여 회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 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긴급산보위 진행

- 사고 발생/접수가 되면 **최소 6시간 이내에**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자. 산보위에서는 현장보존, 사고원인조사, 조합원 간담회, 재발방지 대책을 기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 6시간의 의미?

- 사고원인에 대한 파악(목격자 진술 등 취합) 및 해당부서 긴급

조합원 간담회 등 사측과의 대응 준비를 위한 최소의 물리적

준비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

Q. 긴급  
산보위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 재해에 관한 사항

# 긴급 산보위 - 논의 사항

## 1> 작업중지 및 현장보존

사고발생공정은 원인파악 및 현장개선 계획이 마무리되기  
작업이 중지되고 현장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자. 법 규정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작업중지 및 현장보존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 놓는 것이 사업주가 임의대로 작업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2> 조합원 간담회

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을 위해 반드시 전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자. 이를 통해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파악, 실제  
조합원들의 작업방식,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사고발생 현황 등에 대한 논의는 주요한 대책활동이다.  
조합원 간담회 시간보장, 방식 등에 대해서 산보위를  
통해서 심의·의결을 하면 작업중지 기간동안 유급으로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대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

### 3> 트라우마 치료 보장

특히 사고 목격자 및 사고 공정에 일하는 조합원을 포함해 조합원들의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 또한 산보위에서 심의·의결하여 피해 조합원들에게 심리치료 및 특별휴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시) 태안화력,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특별휴가를 권고하여, 노동자들이 특별휴가를 보장받은 상태로 대책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 4> 작업중지 해체 신청 절차

사업주는 작업중지가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한다. 작업중지 해제의 선결조건은 사고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완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회사가 개선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회사가 작업중지해제심의를 요청하면, 노동부는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작업중지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할 수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8. 현장조사

- 현장의 전문가인 해당 공정의 조합원이 포함된 상태로 현장조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 사고 공정 이외 조합원 간담회 및 인터뷰에서는 사고공정과 유사한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조사는 해당 사업장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뿐만 아니라, 지역과 산별노조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조사될 수 있다.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

## 왜 조합원 참여가 필요한가?

- 조합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 대응투쟁을 진행하는 동안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
- 사측의 작업중지 기간에 통제전략을 단호히 끊어내야

- 태안화력의 한국발전기술조합원들은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작업중지 기간 동안 특별휴가를 쟁취했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투쟁의 핵심적인 힘이 되었다. 사측은 투쟁동력을 유실시키기 위해 긴급작업 등의 사유로 작업중지명령을 일부 해제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책위의 대응으로 무력화되었다.





## 현장의 안전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요구를 모아내기

한화토탈 SM유출사고 당시  
전국플랜트건설노조충남지부는 노동부  
투쟁을 통해 특별근로감독 참여권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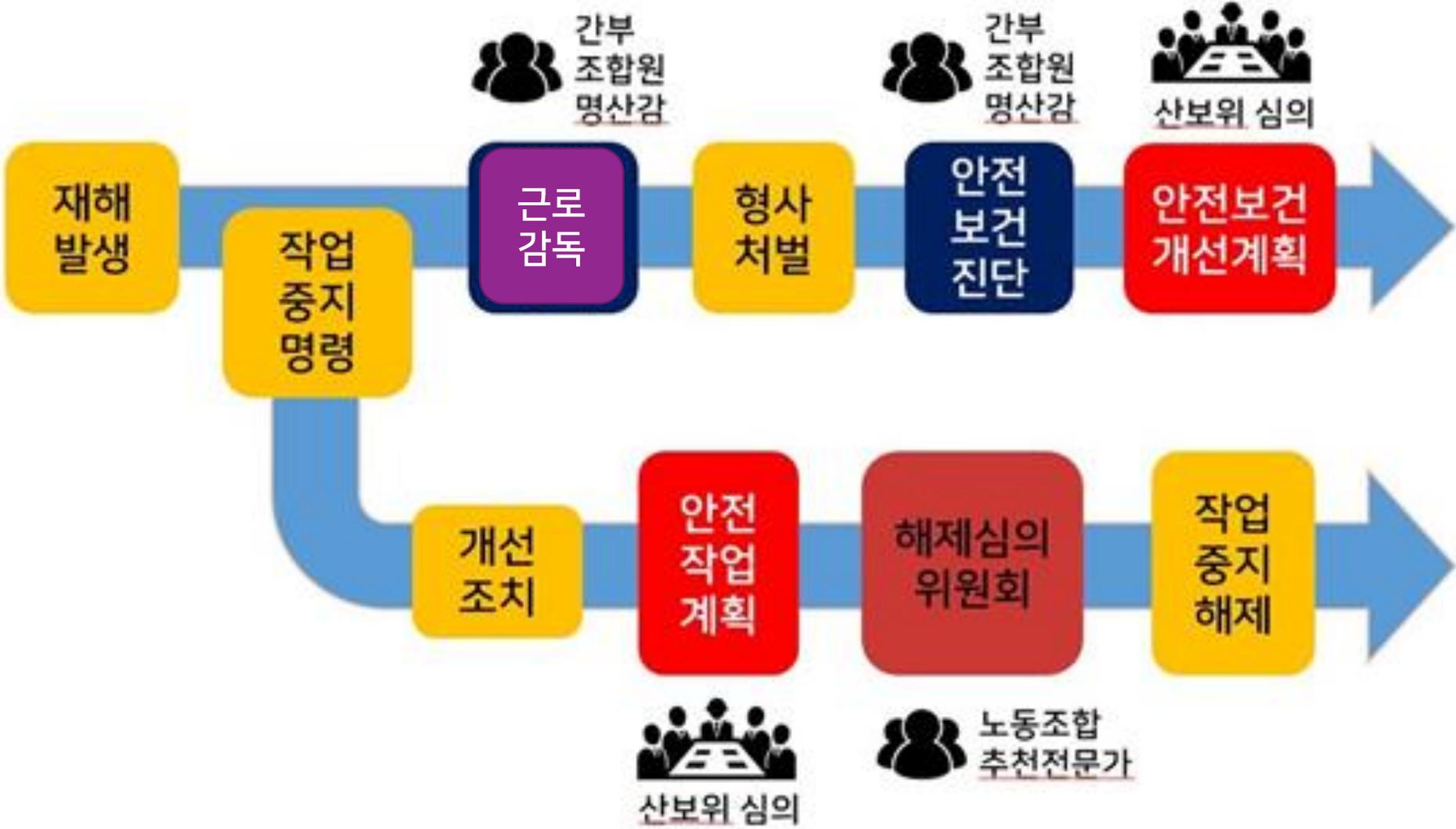
이후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대산석유화학공단의 중대재해로 인한  
특별근로감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안전보건 요구의 관철

- 근로감독 과정에서 참여 요구
- 작업중지명령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개선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
- 안전보건진단의 결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산보위 안건으로 심의하면서  
추가적인 요구안 제출 등



# 중대재해 발생시 전체 프로세스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① 사고원인조사 직접 참여 및 간담회

-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이 파악한 사고원인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사측이 유포할 수 있는 사고원인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작업중지, 근로감독 등 중요한 국면마다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여 노동조합의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조직력을 유지해야 한다.
- 해당 작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때 가장 정확한 사고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② 현장안전보건 점검

- 중대재해 대응과정은 사고현장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이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문제들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 각 공정이나 부서별로 위험요소와 범위반사항들에 대한 사진, 증언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대재해 대응과정에서 큰 힘이 되고, 조합원들에게도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 형식은 자체적인 현장순회점검, 간담회, 또는 상급단체나 외부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인터뷰, 분임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정리된 자료는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등의 대응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구성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③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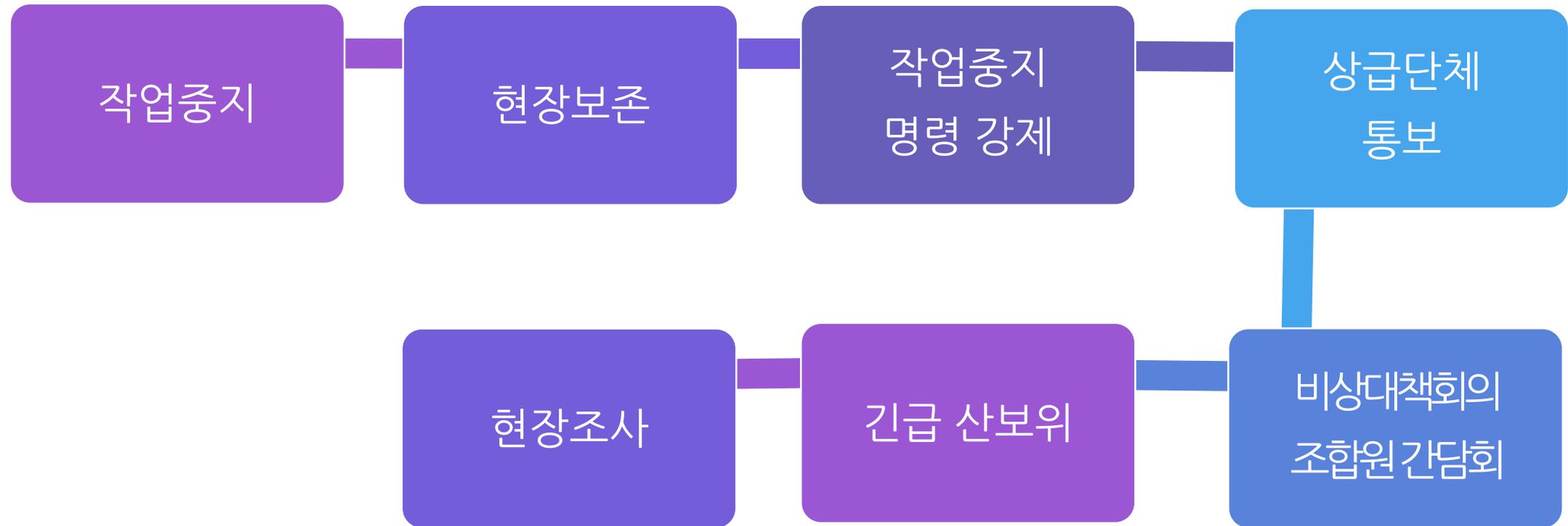
- 중대재해 발생시 진행되는 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에서 사측의 은폐와 축소를 막아내고 제대로 감독과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요구하고 참가자들은 별도의 사전교육을 통해 참여의 방법과 역할을 숙지하도록 하며, 참가자들은 감독과 진단 기간동안 매일 자체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과 부족한 부분, 핵심사항들을 공유해야 한다.
- 감독이나 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각자의 현장에서 감독과 진단이 진행될 때 감독관 등에게 자기 현장의 안전보건문제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간담회를 통해 감독과 진단일정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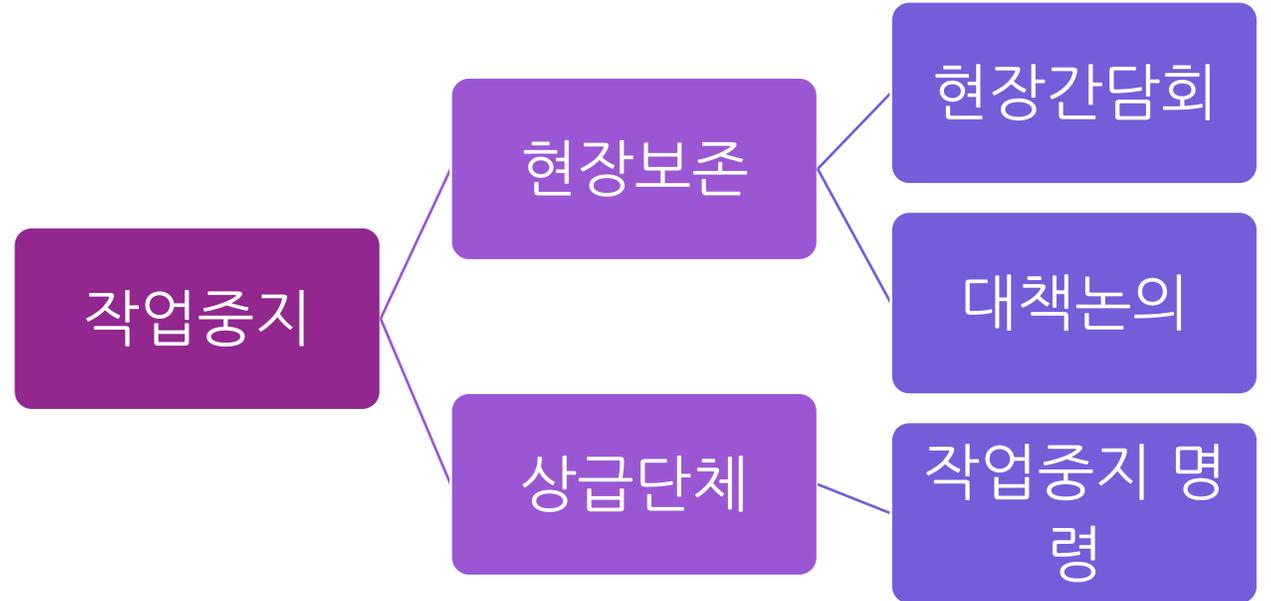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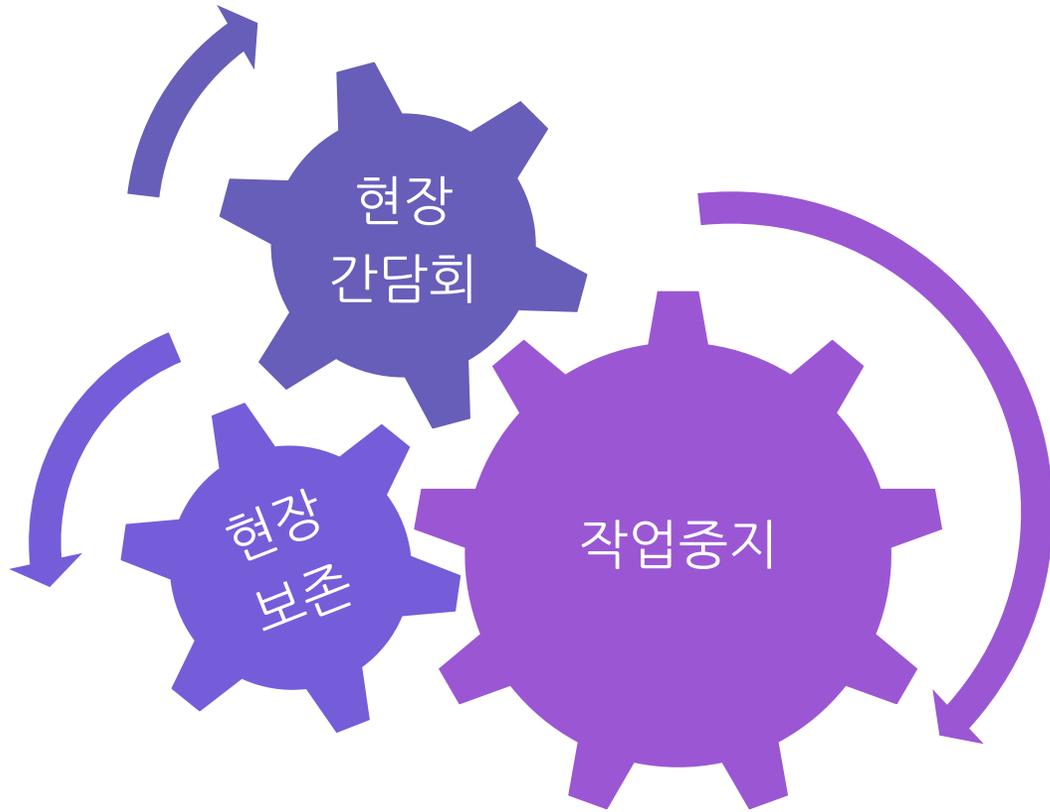
#### ④ 작업중지 해제요청 시 현장노동자 의견 제출

-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할 때는 개선조치에 대한 해당작업노동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집단적 동의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에 대한 평가를 산보위에서 다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사측은 작업중지를 해제하기 위해 개별노동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산보위에서 심의하도록 관철시키거나, 산보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개선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와의 대응!

## 고용노동부와의 대응 절차

1. 즉각적으로 현장에 방문하도록  
강제

2. 사고 원인에 대한 노조의견 청취  
및 간담회 실시

3. 조합원 대상의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설명 요구

4. 사고 현장 조사 및 해제 과정에  
노조 및 유족 참여(추천전문가) 보  
장 관철

#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재해

-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함께 대응하고 싸워야 한다.
- 지역차원에서 함께 성명 및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면담 등을 반드시 진행하자.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의 지침은 계속 후퇴한다.
- 사고와 관련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역차원의 개입과 선전, 선동을 진행하자.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싸우자.

# 사망 사고 발생건

차체부품구매 2019. 12. 04(수)

개 요  
(요약)

사내 하청1200톤 프레스 작업자 사망 사고 발생  
- 안전보건공단 / 노동부 / 과학수사대 수사 예정

내 용

## ▣ 사고 내용

- 1) 사고일시 : 2019. 12. 04(수) 오후 12시 55분
- 2) 사고자 : 도급사 상남산업 우즈베키스탄인 1명

## ▣ 사고 사유

- 1) 1200톤 프레스 라인 금형 교체 작업중 **작업자 실수로 사망 사고 발생**  
- 2인 1조 프레스 금형 교체중 머리쪽 끼임 놀림으로 인한 사망

우즈베키스탄

평택경찰서

## 700t 프레스기 '떠넘긴 위험' 코리안드림 짓이겨지다

손성배 | 발행일 2019-12-06 제7면

+가-

평택 車 부품 공장서 우즈베크 출신 50대 기계 교체 중 협착 사망  
포항·서울 등 외국인 노동자 사고... 이주공대위 "산재 60% 증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 협착 사고로 숨졌다.

5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15분께 아산국가산  
업단지 포승지구(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의 금속공장 M사에서 일하  
던 노동자 김모(56·우즈베크)씨가 프레스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  
됐다.

HOME > 안전과 건강 > 전문가 칼럼

##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 | 승인 2019.12.12 08:00 | 댓글 0

지난 4일 오후 1시,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가 자신이 일 하던 공장에서 사망했다. 금형을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프레스기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무게 700톤짜리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려 머리와 상체가 짓눌려 죽음에 이른 것이다.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무게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금속 기계에 눌린 그는 8시간에 1명, 하루에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한국에서 두부와 상체가 협착돼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뒤늦게 고인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이주노동자, 50대 김아무개씨라는 것이 밝혀졌다.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성명서]

##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월 4일 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 지구에 위치한 (주)미\*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 '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입력 2019.12.07. 오후 9:35 · 수정 2019.12.07. 오후 9:47

 민정희 기자 >

  18

 37

 [가](#) 











경찰과의  
대응!



# 재해자의 사망장소에 따른 대처

## 1> 현장에서 사망했을 때

-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변사자(變死者)’로 분류 (병사나 자연사가 아닌 경우로, 범죄로 인한 사망의 의심이 있는 때) 변사자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검시(檢屍)하도록 되어 있다.
- 병원 외부에서 사망하였으나 112나 119에 신고가 없었던 상태에서 사설구급차나 회사차량 등의 방법으로 병원에 도착한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로 파악한다.
- 검시 결과, 사망원인이 살인과 같은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유족에게 시신이 인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망원인을 변사자 검시만으로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검이 실시되고, 부검 이후 시신이 인도되어 장례를 치르게 된다.

## 2>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을 때

- 사고발생 직후에 112,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경찰에 사망사실을 알리게 된다. 치료가 상당부분 이뤄진 경우라면 변사자 검시를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시를 하기도 한다. 필요하면 부검을 한다.

### • 3> 부검에 관한 대응

- 변사자 검시를 통해서도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부검(사체의 해부)을 한다. 일반적으로 부검은 유족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법률적으로만 보자면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 제219조, 제221조의4).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강제수사'이므로 유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나 사체의 해부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41조) 유족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면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하는 경우는 없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 4> 노동부에게 빨리 알리자!

- 경찰이나 소방서는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을 한 사실을 노동청에 알리지 않는다.
- 달리 말하면, 노조나 동료, 유족이 노동청이나 언론에 알리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즉시 인지할 수가 없다.
- 경찰조사 대응에 앞서서 노동청에 중대재해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의 산재현장 은폐가 있기 전에 근로감독관이 즉시 중대재해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

# 경찰조사시 유의사항

## 1> 수사계통에 대한 이해

경찰은 검찰에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하고, 이에따른 수사와 기소의 총괄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경찰 사건 초기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고사/타살/자살 여부를 수사하고, 사고사라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면 부검여부까지 고려한다. 이 절차는 모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야 유족에게 시신이 인도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실무적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잘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다...

## 2> 경찰조사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자세

- 수사일정을 노동조합이 변호인의 협조하에 경찰과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므로, 노동조합의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율, 조절할 수 있다.
- 임의수사란, 조사받다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집에 가고 싶을 때는 집에 가도 된다는 의미. 예를 들어서 조사받다가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심리적으로 너무 괴롭다면 조사를 멈출 수도 있고, 귀가할 수도 있다.

### 3> 경찰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혐의를 두고 수사한다.

- 경찰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이 아닌 개별적인 행위만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죽음과 조금이라도 관련있어 보이면 동료 노동자도 피의자로 입건한다.

■ 2인 1조 중에서 1명이 사망한 경우 경찰은 동료근로자의 잘못으로 죽은 것은 아닌지를 수사할 수 있다.

■ 2013년 삼성전자 화성 불산누출 사고의 경우, 경찰은 '사망자의 과실'로 본인이 죽었고 동료노동자도 다쳤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다. 경찰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경찰조사로 산재사망이 자살사건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

■ 2014년 현대중공업 도장부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노동자의 사건의 경우, 사망직전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경찰은 가족관계나 채무관계를 조사하여 자살로 단정지었다. 근로복지공단도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자살로 보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산재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고사'로 보아 산재가 인정되었다. 사망시부터 산재인정시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다.

- 동료를 피의자로 부르는 마구잡이식 경찰수사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가 노동조합과 변호사의 충분한 지원하에 경찰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찰조사를 당장 하기보다는 트라우마가 악화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경찰에 강력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 경찰조사보다도 노동청에서 먼저 사고원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사례를 보면, 당시 사고를 직접 목격한 동료 노동자가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아무런 치료나 지원도 없이 방치해두고 있었다. 그렇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곧바로 경찰에서 목격자로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되어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커졌다.

■ 2018년 태안화력 사례에서도 고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도 곧바로 경찰에 불려가 참고인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커졌다.

#### 4> 유족 조사에서의 초점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평소 원한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채무관계는 어떤지, 가정불화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 살인인지, 자살인지, 아니면 업무상과실치사인지를 구별한다.

경찰은 부검을 원하는지도 물어본다. 특별한 사건이 아닌한, 수사기관은 부검을 하지않고 조속히 종결시키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족이 사망원인에 의혹이 있다면 부검을 하는 것이 낫다.

노동청/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조사

-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사건에 한해서 경찰의 지위에서 수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 노동청의 수사는 노동자의 사망에 있어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산안법상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다.
- 기초적으로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를 밝혀내지만, 거기서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제반 행정규칙을 지켰는지를 찾아내서 사업주에게 산안법상 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의 조사/수사**이다.



유족의 곁에 서기

# 초기 대응

노동조합에서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장례식장에 신속하게 가서 유족을 만나 뵙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상조 담당자와는 별개로, 유족과 아주 사소한 사항부터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족의 사소한 목소리와 불편함도 해결해줘야 서로 마음을 열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작업환경 개선으로 나갈 수 있다.

또한 유족들에게, 같은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줄 수 있는 산재피해자 단체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다시는', '김용균 재단' 등)

유족,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

##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 - 생명안전 시민넷 제9조 (피해자의 권리)

- ① 누구든지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피해자는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의 발생경위·구조 및 수습과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③ 피해자는 재난 대응 및 수습과정에서 아래 각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2.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4.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5. 유류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6. 피해자들이 회합할 권리
7. 의료지원·이동지원·주거지원·심리지원·치유휴직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8.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수습을 요구할 권리
9. 사고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의 조사과정에 참여할 권리
10. 법률에 따른 배·보상을 지급받을 권리
11.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당해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 유족이 함께 할 때

- 태안화력(고 김용균)의 경우를 보면 유족이 노동조합을 신임했으므로 김미숙 어머니가 태안화력 1~10호기 전부 작업중지 명령을 요구하고(노동청은 9~10호기만 작업중지), 재해원인조사도 함께 했으며, 진상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유족이 참여했다.
- 유족이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고 수사와 조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노동청이 말릴 명분이 없다.
- 단, 유족이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투쟁이 그 이후부터 멈춰버리는 것은 아니다. 유족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이 투쟁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 유족이 우려하는 지점

-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인 노조가 사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에 관한 근본적인 불신
-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상당한 배상금을 제시하는 경우에, 노동조합과 결합하면 산재처리가 곤란해지거나 배상금을 못 받게 된다는 우려
- 노조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것에 관한 우려
-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일에 이어서, 언론대응이나 수사기관, 정부와의 싸움 등 큰 일을 연이어 치르게 될 것에 관한 우려

유족의  
우려를  
헤아리며  
곁에 서자!

- 모든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듯이,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의 반응은 각양 각색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유족의 편에 서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을 통하여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산재처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서 조력해주겠다는 약속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도  
활동가들도  
상처받을 수  
있다

---

때로는 유족이 회사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동료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경우도 있다.

---

유족이 원인조사나 재발방지보다도, 모든 것을 잊고 보상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다.

---

진상규명을 위해서 같이 싸우다가 배상금을 먼저 받고 싸움을 멈추는 경우도 있다.

---

노동조합이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와 충분한 배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유족이 그 진심을 몰라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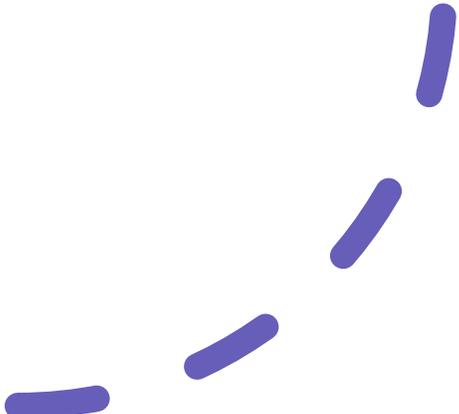
유족이 함께하면 보다 깊고 넓게 사고조사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 1.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 1) 외상사건과 심리적 위기

-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사건·사고를 경험할 때, 사람은 그에 압도당하거나 심리적 불균형에 빠질 수 있다.
  - 여기서 **강력한 사건·사고를 외상사건**이라 하며, 그로인한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심리적 위기**라 한다. 심리적 위기를 확대·강화하는 사건이 지속되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질 수 있다.
- 

##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트라우마)

외상 사건 이후 공포나 불안, 악몽(반복적인 꿈), 대인기피 등의 심리적·신체적·행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1개월 이내 시작되어 1개월 까지 지속될 경우 급성스트레스 장애로, 증상이 1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을 수 있다.

핵심은, 누구나 장애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각적 개입과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

### 3) 산업재해와 트라우마

- 산업재해 역시 개인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외상사건이다. 이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사고 당시의 장면이 불현듯 떠오르고, 반복적인 꿈을 꾸기도 하며, 사고 장소로의 복귀에 대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의 성격이 구조적, 조직적 문제임에도 노동자들은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현장이 그렇듯이 과거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면, 고통은 더욱 커진다. **중대재해에서 트라우마 예방 활동이 개인의 치유와 더불어 작업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 2. 트라우마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활동

### 1)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하기

발생한 재해의 성격, 사건의 원인, 피해의 규모, 조직 및 책임단위들의 역할, 대응의 목표 등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다. 사건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동료들 죽음을 이르게 한 상황에 과몰입하여 무기력감과 죄책감이 가중되는 것을 막아준다. **상황을 객관화하고 분리함으로써 자신 역시 그 사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2) 트라우마 예방·관리 체계 세우기

고용노동부 산재트라우마 관리 매뉴얼을 참조하여

▲전문기관(근로자건강센터, 민간협력기관 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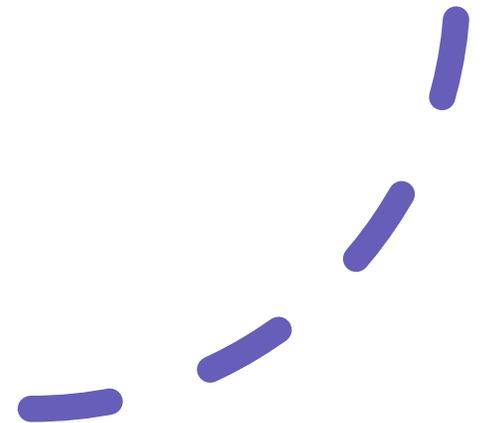
▲직·간접적 피해규모와 대상범위 확인(회사에 요구하여 명단 확보) ▲노동조합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담당자 선임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예방 계획 수립·공유

▲교육, 면담(상담) 시간 및 장소 확보

▲전체 구성원에 대한 트라우마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 트라우마 예방·관리 대응이 48시간 이내,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 등으로 기간별 대응방안과 원칙이 존재하나, '트라우마'의 특성 상 그 대응방안이 피해자 및 생존자들의 통제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정이어선 안된다. 즉, 무기력한 피해자를 대상화하여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건당시 그들이 빼앗겼던 통제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3)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후속조치

트라우마 예방·관리 과정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 다르다. 당장의 위기감을 벗어나 안정감 회복에 노력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전문치료를 연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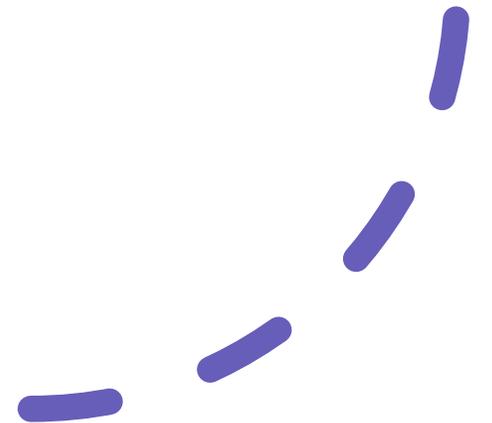
▲병원 연계 시 비용문제(회사에 요구)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한 복귀를 고려한 작업중지 해제 원칙 마련 ▲지속 치료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시간 유급(휴직) 방안

▲산재보상을 위한 준비와 진행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 4) 트라우마 예방·관리의 종결에 대한 합의

노동조합, 피해 및 생존자, 전문기관 등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종결한다. 노동조합 내부의 담당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진행과정 에 대한 보고와 이후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트라우마 예방·관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향해!

- 동료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마음을 모으는 일상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기로!
- 일상적인 산보위의 운영을 통한 사업장 차원의 노사공동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의 유해위험 발굴 및 이를 통한 현장 개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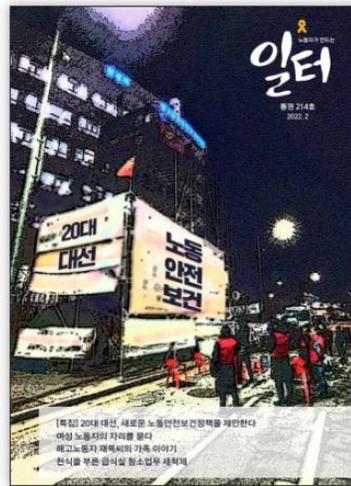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일터] 통권 215호(2022.3)**  
2022년 03월 24일

특집 04차이를 좁혀 평등하고 건강한 노동시간으로 ■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노동시간’을 ■ 성별 불평등한 노동시간에 맞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 ■ 금융노동자들이 지닌 노동시간 단축의 불씨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16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의무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알아보자, LAW동건강 19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지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2과로 자살에 관한 두 권의 책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5학교에서 일하는 예술가, 예술강사 - 학교 예술강사 김세용님 인터뷰 현장의 목소리 29‘10년째 대리라니?’ 프로젝트 - 사무금융노동조합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인터뷰 문화로

[더 보기](#)



**[일터] 통권 214호(2022.2)**  
2022년 03월 02일 / 교육과로사, 노동안전보건정책,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일터, 일하다 마음을 다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시 버스공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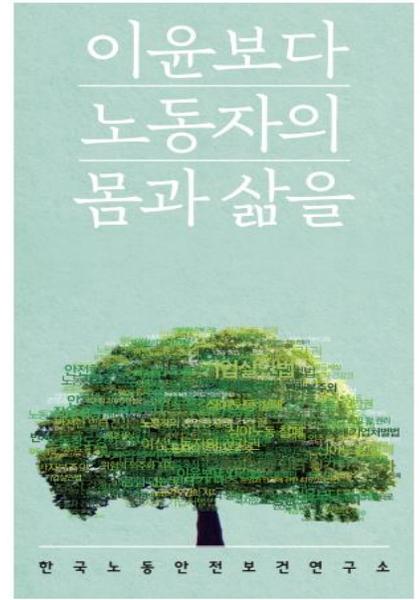
특집 0420대 대선, 새로운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제안한다 ■ 시대에 조응하는 안전보건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노동 건강 불평등 완화로부터 ■ 안전과 건강이 ‘권리’라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기를! 지금 지역에서는 14부산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기대와 함께 알아보자, LAW동건강 16 가사노동자 실질적 노동권 보호 가능할까? 연구리포트 19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노동환경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3일본에 안전한 교육부문 노동자 과로와 신종 노동운동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건강하게 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30민주노조

[더 보기](#)

후원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연구소가 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밑거름입니다.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주시는 모든 분께 매월 연구소가 발행하는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를 보내드립니다. 또, 한 달 동안의 연구소 활동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it.ly/한노보연후원회원이가입신청>

후원회원 가입 신청을 하신 후, 회비 및 후원금 납부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①CMS(자동출금): 구글독스 가입신청 후 CMS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회원정보작성 (자필서명 필수) → 스캔or사진 찍어 → 이메일(kilshlabor@gmail.com)로 보내기

※CMS 후원은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명의로 출금되고, 소득공제용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자동이체는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연말소득공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CMS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CMS 신청서 다운받기](#)

카  
모  
최  
[토  
일  
[뉴  
기  
[건  
영 (2  
[노  
강  
것  
중  
월